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05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송옥주·임미애·윤준병
오세희·이개호·황명선
이원택·전종덕·주철현
박 정·김현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도구 구입과 관리·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을 상대로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에”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으로, “마을에 소독”을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으로, “가축질병 관리에”를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시설·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개선”으로, “일부를”을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을 상대로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시설·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개선에-----일부 또는 전부를-----.</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